

제391회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 2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1년11월18일(목)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의안번호 2110093)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18)
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04)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492)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39)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22)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80)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1)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61)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25)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59)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15)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42)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10)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61)
1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62)
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95)
18.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835)
1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622)
2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703)
2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743)
2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8626)
2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8802)
2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598)
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65)
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26)
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18)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49)
2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51)
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69)
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79)
3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70)
3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70)

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80)
3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1)
3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58)
3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48)
3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89)
3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03)

상정된 안건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3) 3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8) 3
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4) 3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92) 14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9) 15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22) ... 15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0) ... 15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1) ... 15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861) 15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5) ... 15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9) 15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15) 15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42) 15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0) 15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1) 15
1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2) 15
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5) 15
18.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35) ... 15
1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2) ... 15
2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3) ... 15
2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43) 15
2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6) ... 15
2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2) ... 15
2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8) ... 15
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5) 15
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6) ... 41
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8) ... 41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9) ... 41
2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1) ... 41
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69) ... 41
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9) ... 41
3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0) ... 41
3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0) ... 41
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0) ... 41

3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1)	41
3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258) ...	41
3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8)	41
3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89)	41
3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3)	41

(14시03분 개의)

○소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무조정실 소관 3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2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4건 등 총 39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윤성욱 국무2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3)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8)
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4)

○소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국조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

데요.

○소위원장 김희곤 유의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동 위원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요.

지난 8월 31일 날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소위 자료 2페이지에 지적된 것처럼 환경부 소관의 기후위기 대응법 통과에 맞춰서 국무조정실 소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필요했는데, 그러려면 우선 정무위에 계류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6건에 대해서 논의를 일단 한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위기 관련 분야를 빼고 지속가능발전 부분을 어떻게 제정안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게 순서인데 오늘 이 상정 안건을 보면 정무위에 계류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6건은 물론이고 김병욱 의원안하고 병합심사 해야 되는 한정에 의원안도 제외가 돼 있거든요. 이게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병합심사를 위한 조건, 안건조정 및 소위 심사자료를 보완한 후에 이 법안심사를 계속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유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병욱 간사님.

○김병욱 위원 이 법이 과거 아마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을 겁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있던 시기였고 그 이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기후변화가 심각해져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유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련 법은 다

환경부 관련 소관법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저탄소 관련된 법이 통과된 거고요.

사실 그즈음에 맞춰서 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함께 논의됐어야 하는데 저희가 또 다른 법안들도 많이 논의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두세 달 늦은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녹색 분야, 탄소중립 분야는 환경부 소관 저탄소 관련된 법안에 거의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떼어 내고 우리가 이번에는 지속가능법안만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의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정무 위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6건이 있고 또 이것하고 똑같은 법안인 한정에 의원안도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이 자료 안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병합심사 해야 될 텐데 이게 일단은 없고, 또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소위 심사자료라는 것도 원래 여기에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서 병합심사가 필요한 내용이나 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시다만 현재 계류 중인 의안 중에 동일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은 병합심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법안 같이 올려서 이 자료를 다시 꾸며서 다음번 법안심사 때 이것을 함께 하는 것이 맞지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은 중복된 내용을 또 다루는 내용이니깐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전문위원님……

○**유의동 위원** 이 기후위기 대응법이라는 게 국회 본회의를 8월 31일에 통과했는데 심사자료에는 8월 19일 환노위에서 심사된 내용까지만 있고 이 업데이트도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자료들을 완비해서 다음번 소위 때 논의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일단 보류했다가, 유의동 위원님 말씀이 일견 타당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이용준** 지금 말씀 주신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게 7개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유의동 위원님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노위에서 의결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가 됐습니다.

그 비고란에 보시면 환노위에서 통과된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9월 24일 날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내년도 3월 25일 날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부칙 제2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했습니다.

그 폐지되기 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우리 정무위원회 소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폐지되는 게 내년 3월 25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2번부터 7번까지 6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우리 위원회에서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법을 논의하시면서 필요하다면 이건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폐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은 사실 환노위에서 논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내용과 지금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지속가능발전기본법하고 내용이 2개가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같이 병합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오늘 할지 아니면 다음 주에 그걸 포함해서 같이 하실지 정해 주시면 다음 주에 소위가 또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재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일단 오늘은 좀 보류했다가 다음 주에 논의해 주고요.

○**김병욱 위원** 저는 뭐 일주일 뒤에 심의하는 걸 반대는 안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유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번 2번부터 7번까지는 개정안이거든요. 이 법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고요.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서 내년 3월 25일 날 이 모든 것이 폐지됩니다. 폐지되기 때문에 저의 지속가능법안도 시행일자를 여기에 맞추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한정에 의원님이 발의한 법은 제가 지금 발의한 법 중에서 녹색과 탄소 부분만을 떼고 나머지 부분을 지속가능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꼭 이것

을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다음 주에 심의하겠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좀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2번부터 7번까지는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의 법이 내년 3월 25일에 없어지기로 이미 본회의를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같이 하자’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해 주시면 충분히 오늘 심의 가능한 그런 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동 위원** 폐지라는 게 내년 3월, 그러니까 22년 3월이고 현재까지는 살아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는 절차적인 것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이 법은 이런 절차적인 것들이 다 완비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영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세 가지 법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 한번 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으로 간단하게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정에 의원님 법안하고 김병욱 의원님 법안하고 본회의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것은 제목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정리 자료라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나……

○**수석전문위원 이용준**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용준** 2쪽에 보시면……

○**김병욱 위원** 심의하면서 하시지요.

○**유의동 위원** 아니, 이것은 그냥 다음번에 모든 것들이 완비된 후에 하는, 어차피 논의할 건데 여기서 논의하고 그때 또 논의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소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김병욱 간사님하고 의논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다음 주에 하는 걸 원칙으로 오늘은 좀 보류하시지요.

○**김병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의동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내년 3월 25일 이후에 하자는 얘기인가요?

○**유의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김병욱 위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말씀해 보시지요.

○**유의동 위원** 지금 이게 병합심사를 해야 되는 법도 있는데 그냥 이것만 단독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

지금 이 소위 심사자료에 보면 8월 19일 이전 환노위에서 심사된 내용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우리가 논의해도 늦지 않다. 지금 이것 논의하고……

○**김병욱 위원** 완벽하게 다 되어 있잖아요. 더 이상 어떤 완벽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설명했잖아요. 2번부터 7번까지는 개정안이고 그 법이 본회의 통과됐다고요, 폐지하기로. 더 이상 어떤 절차를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유의동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후위기 대응법이 국회 본회의를 8월 말에 통과했는데 심사자료에는 환노위에서 8월 19일까지 논의된 내용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해서 보자는 말씀이에요.

○**김병욱 위원** 환노위에서 논의되고 본회의 통과된 거라니까요. 그것은 뭐 행정부에서……

○**유의동 위원** 그러면 한정에 의원님 안하고의 병합심사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김병욱 위원** 그것은 그 논의를 하면서 심의하면 되잖아요. 법안 심의를 하면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유의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의사일정 안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가야지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가면 됩니까?

○**김병욱 위원** 얼렁뚱땅 아니지요. 환노위에서 통과된 법이 본회의 통과됐잖아요.

○**유의동 위원** 아니, 그건 김 위원님 생각이시니까 제가 동의를 못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김병욱 위원** 아니, 환노위에서 통과된 법이 본회의에 8월 말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유의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김병욱 위원** 그것을 8월 19일까지의 환노위 논의만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절차적으로 미비하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글자 몇 자 실수한 건데?

○**유의동 위원**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 글자 몇 개 빠뜨린 건데 그걸 절

차적 하자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일단 오늘은 논란이 있으니까 제가 김병욱 간사님하고 한 번 더 협의해서, 다음 주도 시간 있으니까요. 일단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국조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준 소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 의원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 범위에 별칙 규정의 타당성을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개위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제 신설·강화에 부수되거나 또는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을 신설·강화하려면 규개위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도한 법정형 신설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규개위는 현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이와 같은 형벌의 신설·강화 심사를 위한 심사 요청에 따라서 별도로 28조의2를 신설해서 형벌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 심사조직을 구성하려는 입법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행법 제28조에 따르면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가 있고, 각주 2번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21조 1항에 따라. 그런데 작년 말……

3쪽의 구성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분과와 행정사회분과, 2개 분과위원회의 현재 구성·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과연 별도로 형벌의 신설·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실익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입니다.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벌이 규제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기본법 제정할 당시부터도 일정한 사항들은 규제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고요.

제3조에 그런 제외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형사나 행형,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 외에도 조세라든지 군사시설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과 관련된 사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형사 사무라는 사법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형벌을 규제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행정규제기본법의 입법 취지가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부입법 시 형벌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현재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법무부에서 별도로 다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별도로 규개위에서 다시 심의할 실익이 있느냐 하는 측면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법무부에도 저희가 의견을 좀 받아봤는데요, 법무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형사 사무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당시부터 사법행위라는 고유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행형이나 보안처분 등과 함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걸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법무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도 법무부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 어느 분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대표발의하신 분이 안 계셔서.

대표발의를 하셨을 때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발의를 하셨을 텐데 혹시 그 이유가 어떤 이유였는지 들을 수 있나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저희도 따로 들은 게 없어서……

○**배진교 위원**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형벌과 관련된 걸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운영 상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법안을 발의하셨을 텐데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법안 발의한 내용 중에 혹시 그런 게 있었는지……

○**소위원장 김희곤** 아니면 전문위원님이 답변……

○**수석전문위원 이용준** 대표발의하신 홍석준 의원님의 제안 이유를 보면 규제는 보통 기업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인데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사안도 징역형까지 좀 과하게 부과한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는 것을 규개위에서 다른 부처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심사를 받아서 사전 억제 장치가 좀 필요겠다, 그래서 제안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배진교 위원** 처벌조항이나 이런 건 국회 입법 사항인데 위원회에서 이걸 다루는 게 체계상 맞는지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준** 그 부분은 정부입법 과정이고요. 정부입법을 해서 정부가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국회에서 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정부입법 단계에서 그렇게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이고 최종적인 입법심사권은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지금 국무조정실 입장은 현행법 체제하에서 형사나 행형은 규제심사에서 제외되고 특히 형벌을 강화할 경우는 법무부와 사전심의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또다시 이 법에 형벌 강화를 규제개혁위원회 대상으로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저는 국무조정실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문 위원** 3조에 보면 분명히 이 법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형사에 관한 규정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모순되는 10조에 그런 규제 위반에 대한 형벌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저도 현행 법체계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그렇게 보고 계신 거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예, 맞습니다.

○**이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박수영 위원** 제안하신 의원님의 입법 취지는

맞는 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 그걸 어기는 경우에 과징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형벌로 많이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한 면이 있다 해서 내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법체계상 규개위가 형벌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곳이 아니고 교수님들도 대부분 보면 행정법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또 조직을 만들어서 확장한다든지……

법무부에서 잘 판단할 수도 있고 또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걸러 주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안으로 만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의견이 나오신 것 같고요.

이 법안은 일단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국조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준** 배포해 드린 소위 자료 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소위에서 정치적 중립성 등의 법제화 필요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안의 내용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명단·경력 등을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소위에서 정치적 중립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정쟁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과 사참위법 등에서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입법례가 있으므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법제화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를 정쟁화할 우려가 있고 제도 운영 측면에서 다양한 사람이 골고루 위촉되도록 하는

법제라기보다는, 운영 측면에서 입체적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으로 내부 규정이나 대책을 신중하게 해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지난 국정감사 문제 제기 이후 하자 치유를 위한 노력이 없었으므로 국무조정실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기본적으로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공무원인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것이지만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법에서 명시적으로 강요할 수 있겠느냐, 그게 바람직하냐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 문제, 다양한 입법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민간위원 위촉 시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극히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있는 경우에도 경찰이나 선거사무과 같은 국가경찰위원회라든지 해양경찰위원회 이런 경우는 국가의 공권력과 관련이 되는 업무들이고요.

다음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건 정치적 중립을 갖추어야 되는 선거사무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위원회의 기능상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라든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정 현안을 위해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고 이 위원회들은 사실은 조사라든지 진상규명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같이 정책 수립을 하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달리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유사한 세대를 다루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라든지 여성이나 저출산·고령화 이런 유사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서는 이런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동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위원 위촉이니까 정치적 중립이 꼭 지켜져야 될 필요가 없다, 강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공권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꼭 그렇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청소년·여성·저출산·고령화 이런 데에서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죽하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여기 면면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국정감사 두 차례 치르면서 그때 지적을 했었던 내용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된단 말이에요.

국무조정실장이 나와서 대답한 것은 ‘우려는 충분히 알겠지만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임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화돼요.

그건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예, 저희가 좀 조사를 해 봤는데……

○유의동 위원 별문제가 없어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두 분이 그런 정치적인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직을 하셨고……

○유의동 위원 누가 사직을 했어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전효관 위원하고 홍서운 위원하고 두 분이 해촉됐습니다.

○유의동 위원 그분들은 왜 해촉이 됐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저희한테 밝힌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후임 인사를 정치적인 논란이 되지 않는 분들로 지금 후임 인사를 했고요. 한 분은 했고 한 분은 지금 현재 찾고 있는 중이고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유의동 위원 지금 휴대폰이나 이런 걸 열어서 유튜브 한번 보시고요. 유튜브 열어 가지고 ‘황희두’라고 한번 쳐 보세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예, 어느 분인지

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의동 위원** 지금 쳐 보시라고, 섬네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 이분이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이에요.

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특정 정당 소속이고 특정 대선 후보 캠프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입안해 내는, 만들어 내는 청년정책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지 않고 모든 청년을 대변하는, 온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책일 것이라고 지금 믿으라는 것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의 입장이?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위원님이 염려하시거나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원들을 교체하거나 이런 수요가 생길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의동 위원** 그렇게 고려를 하셔서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이 사진이 17일 오전 9시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 섬네일 보셨어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예, 보고는 있습니다만……

○**유의동 위원** 어때요? 건달만 합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위원회에 와서 활동하시는 것하고 본인이 활동하시는 영역하고는 또 약간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위원회에 오셔서 그런 것들이 이때까지는 큰……

○**유의동 위원** 국무조정실의 궤변을 가지고는 얘기 안 될 것 같고……

소위에 참여하시고 있는 위원님들, 이게 단순히 오늘의 상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입장이 바뀌어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여야라는 것은 언제든지 옮겨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저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청년기본법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것 하자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스펙 쌓는 경력, 커리어 쌓는 경력 만들어 주자고 만든 게 아닙니다.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바로잡겠다는 접근을 해야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무조정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소위에서 입법화를 함으로써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차장님!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예.

○**박수영 위원** 제가 공직에 30년 이상 있었고 정책학 박사인데 차장님의 정부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위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냥 민간인이 아니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나랏일에, 국가 일에 일단은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책 수립하는 데는 조금 정당성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정책에 대한 모독이에요.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이라는 게 제대로 되도록 하자는 건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 정치적인 중립성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궤변을 넘어서 정부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차장님, 지금 공직에 몇 년째 계셨는데 정부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정책 수립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데 정책 수립하는 데는 괜찮고 정부위원인데 민간위원이라서 괜찮고…… 어디서 그런 궤변이 나올 수가 있나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저희가 무방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꼭 이렇게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다,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것은 고려가 될 수 있고……

○**박수영 위원** 글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안 되니까 지금 유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여야가 없는 거예요. 국가의 일을 하는데 총리실에서 중심을 잡고……

아니,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청년정책 제대로 만들자고 만든 게 청년기본법 아닙니까? 그러

면 여야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

국가의 중심을 잡아서 가는 위치에서 답변해 주셔야지 이렇게 편의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약간의 오해가 있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이것을 법에 규정하는 것보다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유념하면서 운영하면 될 수 있겠고 다른 입법례 하등의 정합성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유의동 위원 아니, 그것을 운영을 못 하니까 이 법을 낸 것 아니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시지요. 하루 안에……

예가 너무 많은데 저는 이 수많은 예를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것은 진짜 지극히 상식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정부를 대표해서 나오신 차장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계속 늘어놓고 방어를 하시면……

자, 보세요, 이 황희두라는 분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이분 유튜브를 열어 보시면, 어제 17일 오전 9시부로 내가 이것 뽑은 건데 이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안에 ‘윤석열 압박 시작’, ‘침묵하는 윤석열’, ‘망신당한 이준석’, ‘굴욕당한 윤석열’, ‘이준석 망언 논란’…… 이게 다 들어와요.

하루 종일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청년정책인들 이런 방향으로 안 가겠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좋아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칩시다. 이런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선례 삼아서 다음 정부가, 다른 정부가 들어와서 똑같은 행위를 한다면 우리나라 청년정책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한 정부, 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으시다면서요. 그러고 1년을 기다린 것 아닙니까, 제가? 1년의 결과가 이렇게 더 강한 방향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한테 분명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이것은 입법화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차장님.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이게 어쨌든 작년에 처음 구성이 됐고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유 때문이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든지 사직을 하고 나가신 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조금씩은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앞으로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유념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배진교 위원님.

○배진교 위원 이 사안은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유의동 위원님이 입법 발의한 취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유의동 위원님도 계속적으로 국무조정실에 얘기하는 것은 청년정책조정위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내부 규정을 통해서 원활하게, 편향적이지 않고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것들을 획득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권고를 계속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국무조정실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과거에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있었으나 앞으로 내부 규정 그리고 내부 운영을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겠다고 설득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유의동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진행된 상황들이 있으면 얘기 좀 해 봐 주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법하고 시행령 외에도 저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이라

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규정을 계속 개선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 규정을 좀 고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의동 위원의 작년 국감 때부터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배진교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운영상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물론 고려를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능력적인 부분을 골고루 잘 따져서 청년정책 위원들을 선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유의동 위원님의 법안처럼 정당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아예 명문화시켜 버리면 그동안 나름 정당에서 활동했다든지 또 과거 정당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 또는 과거 정당에서 활동했다가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아예 발탁할 수 없는 그런 역차별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정치적 중립성만 너무 따지다 보면 위원들 선발하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뭐를 했네. 어떤 일에 담갔네’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면 오히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배척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명문화시키기보다는 어쨌든 골고루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탁해서 운영 과정에서 중립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법을 올해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청년인재들이 데이터베이스화돼서, 충분히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면 그분들 중에서 이런 위원으로 발탁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저희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저희도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다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꼭 법에 안 해도, 법에 하면 다른 입법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일관성 문제가 좀 생기니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운영세칙이라든지 이런 데 담아서 운영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정문 위원님께서 그때 발의해 주신 법을 의결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그 DB에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의동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더 화가 나요.

2020년 10월 7일 국정감사입니다.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았어요. 그때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저희들이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식의 편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혹시나 그런 게 생긴다면 또 저희들이 최대한 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아까 어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1년간 쌓여 온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책임을 방기했고 말을 허언했고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2월 달입니다.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차장님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국무1차장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여기 소위에 있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법으로 규제하거나 규제하지 않거나 이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총리실의 결정이나 이 태도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래서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당장 법에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제척·기피 하는 장치를, 훈령·지침 등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지금 고장 난 레코드를 틀 듯이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하신다고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저희가 내부규정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동 위원 아니, 그런 단계는 1년 동안 다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우리 소위에서 법제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김병욱 위원 유의동 위원님이 주창하는 바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당과 정치활동에 대한 혐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질서 유지 또는 선거사무, 경찰과 같은 행정력 그런 차원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해야 하지만 특히 어떤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 인사들의 다양한 경력과 그분들의 발칙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다양한 사회단체와 다양한 정당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정책 자문기구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찬성입니다. 특히나 소수 정당의 참여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보장이 돼야만……

정치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반응을 내가 어떻게 정책으로 승화시켜서, 입안해서 그것을 집행할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과정인데, 정당에 소속된 당원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심의기구에 들어와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은 장려해야 되고 저는 우리가 선진국 사회로 감에 있어서 오히려 법과 행정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과도한 정치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반대하는데 정당원이고 정당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위원회에 들어간 이상 어느 정도 절제되고 자제되고 특히나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이런 행위는 마땅히 줄여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양쪽으로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은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정한 선거사무라든지 경찰행정과 같은 질서 유지 이런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정책 심의기구에 있어서는 다양한 사회단체와 정당 조직의 구성원들도, 특히 소수

정당일수록 다양한 참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후속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예, 알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정책과 행정을 자꾸 정치로부터 오염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차장님 말씀은 분명히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으나 다른 법령하고의 형평성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원 그 자체의 성향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김병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드렸드시 피 다양한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때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편향이 없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나 이렇게 규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후자 쪽의,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와서 그런 외부의 오해가 있는 행동이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박수영 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담보할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도 담보를 못 했잖아요. 그게 담보할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장님?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 또는 정당활동을 해서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자기 정치적인 편향성, 정체성을 버리고 중립적인 얘기를 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중립성은 필요하지만 이것을 법에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다른 법률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속기록 볼까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법에 넣는 것이고 우리가 이게 선례가 없고 형평성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례가 있잖아요. 국회미래연구원법에도 있고 여가수석전문위원님이 정리해 놓은 내용에도 보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무슨 정치적인 성향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들, 정책 결정하는 문제들인데 이런 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법률이 있다고요.

선례가 없다 하더라도 국회가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선례가 있는데 자꾸 없는 쪽만 말씀하시

는…… 전문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될 행정부에서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제가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 주로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선거 관련 사무라든지 국가 공권력 같은 그런 특수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 쪽에 주로 있고……

○박수영 위원 정책 결정에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꼭 정치적인 편향성, 정당을 가진 사람만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청년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되는 것이지.

형평성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안 하시는 겁니까, 선례 분명히 있으니까. 맞지요? 선례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일반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례가 많은.

○소위원장 김희곤 다른 의견.

○윤두현 위원 정책 결정의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하셨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예.

○윤두현 위원 그러면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어떻게 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편향적인 것을 제외하는 방법과 여러 사람이 섞여 있는 것을, 같이 합쳐 놓음으로써 중립화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동의하세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예.

○윤두현 위원 지금 문제가 된, 몇몇 분 이야기도 있고 이랬는데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한다고 그러면 골고루 섞여 있어야지 중립성이 확보될 것 아니에요. 골고루 섞여 있어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윤두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야기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불이익을 받을,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에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자율적

으로 안 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나오고 그것을 강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잘하겠다. 그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들 위촉할 때 위촉 사유 이런 것 정리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위촉장 드리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위원 위촉할 때 왜 하는지 자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추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 안 그러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명단만 죽 모아가지고 발표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국무조정실청년정책기획관 손동균 청년정책기획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들을 위촉할 때 다양한 경로로 합니다. 첫 번째가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도 추천을 받고요, 관계부처에서 전문가 풀에서 공모도 받고……

○윤두현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다, 어떻게 해서 전문가이고, 방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

위원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뭐로 판단해요? 그리고 판단한 근거가 자료로 남아요?

○국무조정실청년정책기획관 손동균 근거나 기준은…… 저희가 2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데 다양하게 3배수나 5배수 내에서……

○윤두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절차이고 그 사람을 왜 추천했는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유 해 가지고 설명이 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설명한 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위원이 될 만합니다’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 이유, 이러이러한 이유, 그것을 따로 모아 놓고 보관하고 있어요?

○국무조정실청년정책기획관 손동균 저희가 별도로 위원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된 분들에 대해서 이력이나 그동안 경력 같은 것들을 올리고……

○윤두현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회의록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청년정책기획관 손동균 회의록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두현 위원 그것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번 쭉 가지고 얼마나 공정하게 됐는지, 방금 이야기한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게 고려가 됐는지 우리가 그 회의록을 한번 볼게요.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막하면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율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율로 했는데 그런 흔적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못 고치면 남이 고치게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배진교 위원님.

○배진교 위원 유의동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이 지금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이 안 돼서 입법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데 저는 어쨌든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당적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적을 안 갖고 있어도 정치적으로 구분하듯이 중립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고 극좌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고 다양한 정치의식들이 있는데 이것을 당적 보유 여부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판단인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하게 제가 국무조정실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선발할 경우는 오히려 각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공신력을 확보하고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위원들의 숫자를 안배하고 하는 이런 내부 시스템을 적절하게 갖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해 줘야……

지금 위원님들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떤 특정 정당 소속의 청년위원들이 정치활동 몫으로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고 했을 때도 정치활동 그리고 정당에서 청년이든 아니면 여성이든 각 부문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경우도 각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던 분들을 위원으로 모실 경우는 확실하게 정당이 책임지고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책 조정에서도 충분히 제기되고 토론해서 종합적인 대한민국 청년들의 발전, 여성들의 발전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 구조로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안 되니까 이것을 법제화해서라도 강제화하자고 하시는데 법제화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롭게 운영해야 되는 위원회

성격상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오히려 국무조정실에 그러한 구체적 운영계획과 관련되고, 그리고 실제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또 해촉하는 사유나 이런 것들도 좀 구체화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실적으로 중립성이 저해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차라리 정치적 중립성, 아까 배진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청년정책을 펼 때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고 또 활동을 그렇게 할 수 있나 없나를 일견 선언적으로라도 이런 조항이 있을 때 내 소속 정당 관계없이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다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이쪽저쪽 의견이 좀 갈리기 때문에 이 안건은 일단 계속 심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아까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서 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02492)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9)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22)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0)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1)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861)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5)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9)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15)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42)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0)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1)
1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2)
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5)
18.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35)
1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2)
2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3)
2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43)
2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6)
2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2)
2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8)
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5)

(15시04분)

○소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04번 및 0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불이익 조치 등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의 상향 조정과 관련돼 있습니다.

고용진 의원·윤창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불이익 등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의 상향 조정입니다. 고용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안은 보복 조치의 금지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상 보복 조치와 대규모유통업법상 보복 조치는 서로 유사한 행위인데도 사실상 벌칙이 법률에 따라 다르게 규정돼 있어서 이를 통일하려고 하는 겁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에서 공정거래법상 벌칙과 동일한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정부는 이 원안에 동의합니다.

먼저 벌칙을 상향하려고 하는 행위가 보복 조치로서 가장 나쁜 행위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대규모유통업법은 감사업자가 모두 대기업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그래서 한 1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정거래법하고 맞추는 게 더 취지가 좋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상수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입니다.

윤창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으로 불공정행위로 인한 납품업자들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정부도 이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부위원장님, 1번 불이익 금지의무에 대한 벌칙 상향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위원님.

○박수영 위원 이 조항에 해당해서 불공정거래 행위나 또는 제재를 했던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심사자료 3페이지에 있는데요. 여러 법률에 보복 조치할 때의 조항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제한 사례는 하도급법에 1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법의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실무상으로 이게 적발하기가 어려운 개행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복 조치로 저희들이 제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요컨대 3쪽에 보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에 무려 1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고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이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저희들이 몇 번, 실제로 조사관이 제 기억에 한 2~3건 정도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전원회의에서 논의는 됐는데 전원회의에서 이것은 개연성,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혐의 처리한 사례는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뭐 어쨌든 간에 고발한 사례는 없는 것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그것은 맞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박수영 위원 아니, 고발한 사례도 없는데 굳이 벌칙 조항을 이렇게 상향할 이유가, 공정위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공정거래법을 낮춰야지……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즉 사례도 없는 것을 가지고 굳이 올리려고 하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 공정위가 아주 편하게 행정을 해요. 벌칙을 세게 때려 가지고 공정거래를 확보하겠다는…… 이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스마트한 직원들, 똑똑한 직원들이 다 모여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칙은 최소화하면서 우리 공정거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이른바 스마트 공정거래에 대해 고민을 해 주셔야지 기회만 나면 벌칙 올리고 기회만 나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렇게 해서 공정거래 누가 확보 못 합니까.

그 과정에서 고통받고 힘들어지는 건 기업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해서 벌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또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를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도 그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적용한 적 없는 벌칙을 뭐 하러 올리는 개정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까? 무수한 위반 사례들이 나와서 이것 벌칙을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공정거래 질서를 확보할 수 없겠다고 할 때 올리는 것이지요. 사례도 하나 없는데 올리겠다고 가져오는 건 저는 이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개연성, 인과관계를 확인해서 고발하는 거고요.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위가 판정될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벌칙을 어느 정도 할 거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저는 보복 조치가 만약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되고 법원이 인정해 준다면 이것은 가장 질이 나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는 게 저는 일용 의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걸 제가 보기에는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유통법은 갑사업자가 대기업입니다, 백화점·대형마트 같은. 그래서 대기업들한테 보복 조치를 하면 더 강한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부위원장님, 지금 규정 가지고도 고발 사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방 효과로서의 메시지는 이미 충분히 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을 개정하려면 고발 사례에 해당하는 건들이 너무 많아서, ‘벌칙이 너무 낮아서 이것을 위반하는구나’ 하는 경우에 올려야지 그런 사례는 하나도 없다면서 벌칙은 미리 올려놓겠다, 그리고 대규모유통업법이니깐 당연히 대규모 유통하는 대기업이나 재벌 이런 쪽의 유통업이겠지요.

일단 부위원장님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게, 이런 사람들은 미리 혼내 줘야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재벌이라고, 대기업이라고 미리 예단을 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까? 사례 하나 없잖아요. 고발 사례가 하나도 없는 것을 미리 올리겠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발 사례가 충분히 쌓이면 그때 개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위원님들 논의에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제가 강하게 주장해서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욱 위원 벌칙이라는 게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효과도 있고 사전 예방 효과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벌칙을 올림으로 인해서 그 죄를 범하지 않게끔 하는 사전 예방 효과가 중요한데 지금 이 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벌칙을 갖고도 범죄 예방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저는 굳이 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범죄를 범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벌칙을 강화해야 되고 벌금을 늘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굳이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동의의결제도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법에 있던 동의의결제도를 대규모유통업으로

로 확대하겠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기업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겠고, 고의가 됐든 과실로. 그런데 그것을 과처벌 위주로 가는 것보다 그 사업자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요. 그 대안을 제시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용하면 그 대안을 지키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 방법은 동의하는 바인데요.

대규모유통업이 주로 대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보니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거의 중견기업은 없고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결국에 너무 돈 있는 기업들만 활용하는 제도로 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예방책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이 정한 이행 기간까지 제대로 이행을 못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에 얼마로 되어 있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200만 원……

○김병욱 위원 200만 원인데 이것도 기업의 규모별로 달리 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똑같이 1일 200만 원으로 했을 때 억제 효과도 좀 적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동의의결제는 현재 공정거래법하고 표시광고법에만 들어와 있었고요. 지난달에 위원님들께서 대리점법에 처음으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법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동안 공정거래법에 보면 총 17건이 있었는데 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애플이라는 중소기업 또 골프존이라는 중견기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신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중견·중소기업이 이것을 신청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은 저희가 피해구제를 가져오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을 기업들이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금액은 상한을 20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기업의 크기 이런 것들은 개별 케이스별로 조금 금액을 달리할 수……

○김병욱 위원 의결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그건 저희 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알겠습니다.

○**윤두현 위원** 아까 대규모유통업에서 보복 금지 위반행위를 적발 못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위원께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는데 적발을 못 한 것과 위반 자체가 없는 것은 좀 차이가 있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윤두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심정으로는 보복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겁을 줘 가지고 그것을 고발하고 또는 공정위 조사에서 그것을 시인했을 때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숨기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법이, 공정위가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뭐냐, 적발된 사례는 없지만 만연하다 또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엄벌주의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없어서 적발이 안 됐다는 판단이면 굳이 엄벌주의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정위가 책임지는 자세로 답변을 주고 서로 토론해서 결론을 짓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윤두현 위원** 그다음에 대리점법상 보복 조치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공정거래법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이 2개만 보복 금지 처벌조항이 필요한 건지 다른 쪽의, 예를 들어 가맹사업법이나 대리점법에 똑같이 보복 금지 이런 조항이 있을 텐데 이것하고도 다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위원님, 심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각 법률마다의 보복 조치에 대한 현행법의 징역과 벌금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정거래법이 3년 이하 2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논의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2년 이하 1억 5000이고 다른 법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윤두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다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저희들 생각

은 가맹사업법 같은 경우 징역은 3년인데 벌금이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맹본부는 상대적으로 조금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어서 벌금은 1억 원 이하로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다만 대규모유통업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기업들이라 공정거래법하고 같이 가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 논의를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복 조치 말씀하신 것…… 신고가 들어올 때 신고 내용 중의 하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내가 거래가 끊어졌다’라는 신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사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진짜 거래가 중단된 게 신고 때문에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신고 내용을 꼭 확인합니다.

가장 최근에, 19년도에 삼겹살 납품하는 업체와 L마트 간의 신고 내용이 있었고요. 우리 심사관이 ‘이것은 신고 때문에 보복…… 거래 중단됐다’라는 결론을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전원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황과 개연성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가 확실해야지 우리가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에서 이게 완전히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마는 하여튼 그 허들을 넘는 케이스는 아직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저는 이 동의의결제도가 공정거래 관련된 다양한 법에 많이 들어갈수록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는 기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형사벌로 가는 걸 제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박수영 위원** 왜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주가 구속이 돼 버리면 회사가 망해 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동의의결을 통해서 기업의 법적 안정성 또 그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법적 안정성을 빨리 확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우리나라의 사법 당국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 많은 고소·고발 사건 이런 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도 우리가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급적 사법기관 신세를 지는 정도의 건을 줄이면서 기업이 빨리 법적 안정성을 찾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서…… 이걸 동의 합의가 돼야 하는

거니까, 안 되면 또 사법처리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서 법적 안정성을 찾아 주는 것이 기업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사법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 윤창현 의원님께서 개별법에 동의의결을 도입하는 법안들을 여러 개 내 주셨고요. 지난번 대리점법도 그래서 도입됐고 오늘 유통법하고 뒤에 방판법도 논의가 됩니다, 방판법은 뒤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가맹법도 내놓으셨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의결이 들어오면 이건 좋은 제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다면 동의의결제도 도입하는 조항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모델로 동의의결 조항을 만들다 보니까 문구를 조금 수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자료 5페이지의 위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다른 사업자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 대규모유통업법이라 ‘납품업자 등’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고요.

그래서 이런 문구 조정 부분이 있는데 허락해 주시면 이것은 저희가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다듬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번 항은 아까 의견이 있었는데 이 건……

○김병욱 위원 올리지 말고요.

○소위원장 김희곤 예, 올리지 말기로 하고요. 정부에서 동의했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건은 다들 동의하신 것으로 하고, 정부도 이견이 없으니까요. 아까 그 문구 수정만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법안이 동시에 올라와 가지고 분리해서 일단 통과시키기로 하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5건의 가맹……

약간 혼선이 있네요.

아까 우리 공정위에서 ‘납품업자 등’ 그것으로 바꾸는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5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6번부터 10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사업자 동의 의무화입니다. 이정문 의원안, 홍성국 의원안, 정부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위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무분별한 광고·판촉행사 강요를 방지하기 위한 것

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홍성국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은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정문 의원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동의도 허용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문 의원안은 광고·판촉행사 시 사전동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나 위반 시 시정조치, 과징금의 대상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까지 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홍성국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그 형식만이 다른데 정부 제출안이 입법화하는 데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정부 측 의견.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정부 의견은 저희가 정부안을 제출한 게 있어서요, 정부안을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8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시 등록제 도입입니다.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 및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하게 될 경우 통일성 있는 가맹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정부 측 의견.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이것도 정부안이고요, 정부안 수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다음.

○전문위원 김상수 10페이지입니다.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 최인호 의원안과 정부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동법 시행령에 따른 가맹거래사 등록

증 교부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그 대여 및 알선 행위에 대해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록증 대여·알선 행위의 금지 및 벌칙 부여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최인호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부안으로 하는 게 법률체계상 보다 부합하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이 내용도 정부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다음입니다.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도입입니다. 권명호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은 가맹거래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등록 취소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 교육·연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정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차관님, 가맹점사업자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등록제 도입하는 부분요, 큰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9페이지, 정부 제출안 14조의2 1항 2호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였을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그러면 여기에서 정부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 넣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정위 측에서 생각하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비율의 가맹단체가 가입했을 때 가맹점사업자단체로 인정할 것인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이게 사실 대표성을 가지려면 숫자를 좀 높여야 되는데 50%를 넘는 순간은……

○김병욱 위원 하나밖에 안 되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하나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한 30% 정도가 어떨까 생각 중인데요.

○**김병욱 위원** 그러면 복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복수일 경우에 어디에다가 대화 창구를…… 공동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저는 그것은 가맹본부가 만약에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김병욱 위원** 아무래도 2개가 되겠지요, 30%면.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2개 정도 되면 두 군데하고 각자 일대일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게 두 단체가 비슷한 성격이면 관계가 없는데 하나는 친사업자일 수도 있고 하나는 친가맹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질서 측면에서 더 복잡하게 운영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현실적인 우려 맞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런데 해결책은 없는 것이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열어 두고 가는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병욱 위원** 이것은 좀 더 고민해 봅시다.

○**소위원장 김희곤** 다음.

○**박수영 위원** 부위원장님, 1번 가맹사업자 동의 의무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에서 보면 판촉행사·광고 이런 것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막겠다는 이런 취지라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수영 위원**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관계에서 가맹본부가 아주 큰 회사, 프랜차이즈급의 큰 회사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게 다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세한 가맹본부도 있지 않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소규모 가맹본부가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전부 이렇게 동의받도록 하면 이게 또 비용이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가, 노파심에서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우리 가맹사

업법에 소규모 가맹본부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이 조항은 소규모 가맹본부에는 적용 안 되도록 그렇게……

○**박수영 위원** 안 되도록 돼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몇 조에 그렇게 돼 있나요? 그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몇 조에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이 법의 개정 안에는 있지 않은데요, 제3조에 보면 적용배제 조항이 있고요.

○**박수영 위원** 자료에는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되는 것은 9조, 10조,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소규모 가맹본부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박수영 위원** 이게 동의를 얻는 데 그것 준수하기 위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닌가요?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흔히 말하는 포스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을 연결해서 수시로 주문하고 전산상으로 하는데 전산상으로 하면 아주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들지 않나?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박수영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위원님, 이게 가맹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와 판촉행사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가맹 분야 설문 실태조사를 해 보면 사전에 협의나 동의 없이 하는 비율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9년에 한 37%에서 20년도에는 44%까지 해서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가맹점들의 불만이 좀 크고요. 저희가 그 조사에서 가맹점한테 이 제도에 대한 찬성을 물어봤더니 96%가 꼭 좀 해 달라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래서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영세 소규모 가맹본부 때문에 염려를 드렸는데 거기는 대상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이정문 위원님.

○**이정문 위원** 제가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 다른 분이나 정부안과 달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의 법률안을 냈는데 정부에서도 때마침, 정부안에서도 2항에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시 등록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이정문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추진된다는 전체하에 제가 지금 말한 일정 동의를 주체로서 사업자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광고·판촉할 때 사전동의는 아까 포스 시스템처럼 개별 가맹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동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취합한 게 일정 비율이 넘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받도록 하는 건데요.

사업자단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한 30% 정도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생각하는 그 비율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단체의 동의를 받게 하면 광고·판촉의 사전동의 그 비율보다 더 낮게 동의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가맹점 보호에는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는 그냥 개별 가맹점 일대일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일정 비율 이상 받도록 하는 게 가맹점 보호에 더 나을 것 같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이정문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가맹점 사전동의율을 대략 몇 퍼센트 정도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광고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를……

○**이정문 위원** 50%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50.

그다음에 판촉은 물건이 판매량에 비해서 직접 들어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한 70%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행령 할 때 입법예고 하면서 해야 될 텐데 광고·판촉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만약에 30%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30%의 동의로 이 행사를 하게 돼서 가맹점한테는 조금 더

안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정문 위원** 그러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30%가 가입할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 가입한 단체가 법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를 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거래조건 같은 것 협의하고 그럴 때 단체가 목소리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광고·판촉행사는 개별 가맹점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이것은 개별 가맹점에 대해서 일대일로 동의를 받게 하고 그게 조금 더 낮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정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단체 부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법률안을 냈는데 일단은 지금 절대다수의 가맹사업자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철회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 하는 것으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다른……

○**박수영 위원** 부위원장님, 동의 의무화와 관련해서 아까 한 70% 정도 동의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박수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는 안 되나요? 동의하지 않은 30%도 따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70%가 동의하면? 그런데 개별 가맹사업자들 입장에서 자기가 위치한 지점, 자기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굳이 판촉행사를 안 해도 물건이 잘 팔린다고 하면 오프아웃, 즉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결정되면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심사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요. 정부 제출안 1항의 단서에 보면 ‘다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 대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어서……

○**박수영 위원** 오프아웃 제도가 있는 것이군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제가 하나만 여쭙볼게요.

현행 가맹 판촉행사에 대해서 법적 정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판촉행사 범위에 대해서

가맹본부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기업 부담과 시장 혼란이 야기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 의견을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제가 들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확인 좀……

우리 공정위 고시가 하나 있습니다. 가맹사업 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인데요, 거기에 보면 광고와 판촉 이런 것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히……

○**소위원장 김희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시행령에는 없는데 저희 고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판촉행사 내용하고 범위가 편의점, 도소매, 외식 등 다양한 가맹사업 업종에 따라서 제각각이다, 다른 상황이라고 말 하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이 부분은 아마 그 업종의 특성이 좀 있을 텐데요. 이것은 가맹본부나 가맹점들이 우리 업종에서 사용하는 광고·판촉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깊은 언더스탠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라면 그것은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운영이 크게 문제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김병욱 위원** 차관님, 이게 광고·판촉인 경우에 지금 현재는 동의율을 70%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광고는 50, 판촉은 70.

○**김병욱 위원** 광고는 50, 판촉은 70.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동의받는 게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요? 그러면 그 비용을 미리 반영하지 않을까요, 가맹대리점에? 로열티를 좀 올린다든지 보증금을 올린다든지 납품 원료 가격을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법인데 실질적으로 가맹사업자 측 입장에서는 광고·판촉하는 데 일일이 동의를 얻는 것 자체가 귀찮다 보면 그 비용을 미리 선취해서 그냥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김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현행법은 일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돈을 건은 다음에 집행 내역만 사후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김병욱 위원** 동의를 받기가 번잡하고 또 판촉인 경우는 동의 안 하면 빼고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가맹점 모집할 때부터 그 비용을 미리 전가를 해서 선취하는 형태로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저희가 과연 실제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잘 확신할 수가 없는데 판촉행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인행사잖아요. 물건을 깎아 주는데 깎아 주는 데 드는 비용을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이 좀 분담하라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매출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여서 가맹본부나 가맹점이 서로……

○**김병욱 위원** 도움이 되는데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그럴 수 있지요. 우리 동네에서는 안 하겠다 그러면 억지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빠져나갈 수 있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이 상생 차원에서 끌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김병욱 위원** 저도 답은 없는, 그냥 순간적으로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소위원장 김희곤** 다른 의견……

○**이정문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제가 동의는 했는데, 제가 과태료 부분을 했는데 그 이유는 과징금이라는 것은 어떤 위반행위를 통해서 얻었거나 얻게 될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거둘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이정문 위원** 과태료는 그와 상관없이 어떤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판촉이나 광고 같은 경우에 가맹본부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을 경우는 과징금 형태로 부과할 수가 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닌 형태가 됐을 때는 액수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과태료의 형태로 부과하는 게 어떻겠

나 하는 취지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위원님, 저희들은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이런 행사를 하면 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하겠다는 거거든요. 과징금 부과할 때 만약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련 매출액이 정확히 산정이 안 되면 정액 과징금이고 그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제재 수단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하나의 위반행위에 과징금하고 과태료의 두 가지를 두는 경우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하든 과태료를 하든 하나를 뒤야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을 두는 게 이 제도의 취지에 조금 더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현행 과징금 규정으로 위반 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이신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그렇습니다.

다만 현행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 내역을 사후에 통보하고 열람하게 하는 기존의 조항도 살아 있는데 종전에는 그것을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정부안에서는 그것 과태료로 전환하고, 절차 위반에 대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사전에 동의받도록 하는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부위원장님, 2번 항목인 가맹점 사업자단체 설립 등록제 문제인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께서 복수로 사업자단체가 설립될 경우에 다투지 않겠느냐, 오히려 없는 것만 못 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더 문제는 소위 친가맹본부의 사업자들만 모여서 사업자단체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가맹점들은 영업행위 하는 데 바빠서, 소위 먹고살기 바빠서 이런 것은 신경도 못 쓰고 자기 사업만 열심히 하는 가맹점들이 대부분이고 가맹본부에서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자기들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업자단체를 하나 만들고 이들이 주도해 나가면서 조직화되지 못한 가맹점들, 이분들에 대한 이익이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정위가 처음 낸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체에 법적 지위를 줘 가지고 협상력

을 올리겠다는 이진데 현실은 그것하고 똑같이 안 갈 가능성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가능성, 복수의 단체들이 싸울 경우, 둘째는 소위 어용이라고 불릴 수 있는 친가맹본부 측 단체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게 여론을 주도하고 나가면 오거나이즈드(organized) 안 된 가맹점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서 신중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공정위에서 조금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배진교 위원** 박수영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경우가 현장에 있는 노동조합에서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수노조 허용할 때도 역시 이런 논의들이 되게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복수노조를 허용할 때도 노조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고 하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단결권을 자주적으로 실현한다고 하는 의미로서 복수노조를 허용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노조 간의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는 결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답게 어떤 조합원들의 지지를 더 많이 얻을 것이냐에 따라서 복수노조 중에서도 협상권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일정 정도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맹단체의 경우에도 실제로 복수로 생긴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가맹업자들에게 누가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적극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 구분이 될 수 있는 문제여서, 박수영 위원님이 우려를 얘기하시지만 이미 우리 한국 사회가 복수노조라고 하는 한 과정을 겪어 왔고 이것이 거의 안착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을 수 없겠지만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는 가맹업자들 입장에서 가맹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랑 주요한, 대등한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안대로, 약간 부족하기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단 가맹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저희가 정부안을 준비했던 취지가 방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가맹본부가 자생적인 또는 민법에 의해서 설립

된 가맹점단체들이 협의를 하자고 그러면 ‘너 대표성 없다’, 상대를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었구요.

그래서 가맹사업법에서 일정 가맹점단체를 회원으로 갖고 있는 단체를 등록하게 해 주고 그러면 대표성은 이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부안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단체협상, 행동권까지 주는 것은 아니구요, 그 단체의 대표성 정도를 일정 요건을 갖춰서 등록하게 해 주면 가맹본부가 대표성 없어서 상대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정도는 없애 주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의……

○소위원장 김희곤 등록을 하게 되면 에스컬레이터 돼 가지고 계속 요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건데 거기까지라고 못을 박으면……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지금 정부안은 딱 거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사실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협상권까지를 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었고 저도 그렇게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기는 한데, 현재 정부나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졌을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일단 대표성 정도는 인정해 주고 이것들이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보완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이 노조 문제에 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시고 오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한 말씀 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있고 그들이 노조를 만들고 전임 노조원이 있어서 노조 활동을 하는 경우하고……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가맹점사업자라는 게. 자기 가게 하나 운영하기도 사실 굉장히 빡세고 어렵고 시간이 없어서 노조를 전임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할 것이고,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입해서 의견을 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구성된 기존의 노조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면 가맹본부에 의해서 조직화된 가맹

점사업자단체가 나와서 본부랑 짝짜꿍해서 이끌어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기 사업 하기 바쁘니까 소위 언오거나이즈드 워커(unorganized worker)가 되는 거지요. 그런 가맹점들이 나오게 되면 진짜 보호해야 될 그분들을 보호 못 할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병욱 위원 저도 아까 초반에 그런 뜻으로 질문을 던졌는데요, 어쨌든 법에 들어가 있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는 있겠지요.

노동조합의 역사를 보면 처음은 50% 이상의 단일노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복수노조로 바뀐 거예요. 복수노조로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가맹사업자단체를 복수로 하자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겠지만 노동조합의 역사를 봤을 때 처음에는 50%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조직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부분도 사실 많은 비중을 두고 공정위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가맹사업자단체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그것을 30%로 낮추다 보면 오히려 자주성보다는 가맹본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맹단체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가맹본부도 그런 유혹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원래 법을 만든 취지는 그게 아니라 가맹사업자단체가 자주적인 단체 결성을 하고 그 힘에 의해서 앞으로 협상권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기초를 닦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초반에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대표성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주적 단체 결성보다는 저는 대표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50% 이상으로 출발을 하는 것도 오히려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러고 나서 운영을 해 보고 복수단체 부분도 검토하는 것이, 우리가 노동조합의 역사를 보거나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좀 더 성숙한 조직 결성의 모습을 지켜본 이후에 하는 것도 늦지 않지 않을까, 처음부터 단체 결성에 대한 비율을 낮추다 보면 그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바의 법적 목표를 달성 못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분석하고

국회와도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잘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박수영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한 사업장에 모여 있는 노조원을 중심으로 한 노조와……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가맹본부의 작용이 더 수월할 수 있겠지요. 한 사업장은 그게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여러모로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복수단체보다는 단수단체로 출범을 먼저 하는 게 이 법의 취지를 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배진교 위원 오히려 김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이게 한 사업장에 조합원처럼 있는 게 아니어서 사실은 30%도 되게 벽찰 겁니다, 만약에 조직을 한다고 하면.

차관님, 가맹점단체와 관련된 요구하는 자영업자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혹시 그분들이 요청하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아마 거기서도 한 30% 정도 얘기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지금 편의점 이든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25%, 30%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확 올리면 그분들이 당장 등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사실은 정부안 말고도 여러 의원님 안이 몇 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가맹점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논의하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그 전에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위원님께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병욱 위원 그런데 지금은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25%, 30% 정도의 구성률을 보이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면 올라간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많이 들어올 겁니다.

○김병욱 위원 많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법적 기반이 있고 법으로 허용된 단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성을 중요시 여길 거냐 가맹점의 단체 결성권이라는 자주적 조직 결성권을 우선시할 거냐 하는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저는 대표성을 우선 봐야지 앞으로 우리가 법의 취지

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그러니까 위원님은 대표성이 중요하니까 비율이 조금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김병욱 위원 예.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 있으시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다음에, 이 내용 가지고 있는 의원님 안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같이 종합적으로 심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는데 등록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니까……

○김병욱 위원 이 법은 통과시키고 비율 문제만 추가 논의하면 되지요, 법은 다 시행령으로 돼 있으니까. 법 통과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법은 통과시키고 몇 %를 최저 가입률로 할 것인가 그것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니까 시행령 만들 때 국회랑 논의하자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희곤 시행령이 아니지.

○박수영 위원 그래도 몇 %가 문제가 아니라 복수냐 단수냐 문제 등등으로 해서 조금 더 연구해 온다니니까……

○김병욱 위원 아니, 법은 통과시켜 놓고……

○박수영 위원 다음번에 논의하면 되잖아요, 연구해 와 가지고.

○김병욱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50% 이상으로 하면 단수가 되는 거지요.

○박수영 위원 아니, 그것은 시행령 문제를 떠나서 연구를 좀 더 해 가지고 의견들을 취합해 오기로 했으니 해 가지고 논의합시다, 성급하게 갈 게 아니고.

○소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그 등록제 문제만 일단 보류해 놓고 나머지는 통과시키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너무 늦추면 안 되니까 일단 다음번……

○김병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소위가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김희곤 준비가 되면 되는 대로……

○김병욱 위원 일주일 만에 연구할 수 있겠나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혹시 12월에

임시회 법안소위 한 번 더 있으시면 그 전까지 저희들이……

○**김병욱 위원** 우리 정무위 너무 열심히 해요.

○**박수영 위원** 하여튼 되는 대로 합시다.

○**김병욱 위원** 되는 대로 하면 안 되는데……

(웃음소리)

○**소위원장 김희곤** 일단 그것은 최대한으로 빨리해 보기로 하고요.

○**배진교 위원** 이게 복잡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의견 수렴을 하고, 현실적으로 50%를 했을 때 지금 당장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편의점이든 마트든 되어 있는데 이런 업종별로 지금 대표성 있게 활동하고 계시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차관님도 얘기했지만 대표성을 인정 안 해 주니까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협상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것을 했을 때 가능한 건지 의견 물어보시고, 의원님들도 아마 비슷한 수준에서 했을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다음 주에 주시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위원장 김희곤** 우리가 욕심이 많아 가지고 법안을 이것저것 다 넣어 놓으면 도리어 통과에 저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정위에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5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4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침 4시가 되었으니까……

○**김병욱 위원** 15분 쉬지요.

○**소위원장 김희곤** 15분만, 4시 15분에 하기로 하고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5분간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5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11번부터 15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용우 의원, 김경만 의원, 정부,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의 다양화입니다.

이용우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더 나아가서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안 마련 권고 및 사업자단체 등이 해당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시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함으로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자 등에게 직접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명시적으로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안 제5항의 조문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페이지 수정의견입니다.

5항에 보시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라고 했는데 수정의견은 공정위가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에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정부 측 의견.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정부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의 공개입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안은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경쟁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참가자들에게 하도급 계약의 입찰금액 및 그 금액을 제안한 입찰자, 낙찰금액 및 낙찰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건설하도급 계약의 입찰 결과 공개 시 계약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공공 분야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 단계의 입찰 결과, 계약 내역 및 하도급 단계의 계약 내역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입찰금액과 별개로 그 금액을 입찰한 입찰자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입찰에 참여한 개별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계약 유찰 경우에도 입찰 결과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문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정부 의견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 그 수정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동시에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만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정조치도 같이 좀 넣어 주시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입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입니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 기간, 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대기업에게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

시의무를 부여하여 1·2차 협력사 간의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결제조건 개선 효과를 하위 거래 단계까지 확산하려는 긍정적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이하 협력사로 갈수록 계약 결제조건이 대체로 더 열악한 게 사실상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정부는 법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 추가입니다.

정부가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에 ‘공급원가 등의 하락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납품 물량 등 변동으로 당초 약정한 납품단가 인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단가 조정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 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도록 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당초 예상보다 납품 물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하도급업체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정부안을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12페이지입니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추가하려는 행위입니다.

김경만 의원과 정부가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에 포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소기업중앙회를 조정 협의권자로 포함하려고 하는 경우는 정부안과 같이 협의 결렬 시 하도급 분쟁조정 조항 및 협의 거부 시 제재 조치, 즉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등 관련 절차 규

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정부안을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분할납부 규정입니다.

정부가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일시로 납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납부 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과징금 납부 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 규정은 공정거래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정부는 정부안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타, 자료 제출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입니다. 정부안입니다.

그 밖에 정부안에 자료 제출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및 조문 정비 규정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 제출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등에 관한 규정의 경우 지난 2021년 8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문 정비 등의 규정은 단순 조문 순서 정비로 개정의 실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정부 측 의견도 같이 들었고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부위원장님, 첫 번째 것 표준하도급계약서 이 부분은, 원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권장합니다.

○**박수영 위원**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정안 4항에 보면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제정·개정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원래 사업자들 간에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그래서 권고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말을 안 들으면 공정위원회가 직접 제정 또는 개정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지금 4항은 저희들이 1차 권고를 하고요, 그리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요.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4항은 현행 1항하고 사실은 내용상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현행 1항이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작성해서 실제로 사업자단체들한테 권고하고 있고요. 그 채택 여부는 사업자 자율입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행은 그런데 개정안은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간 것 같다는 거지요. 권장만 하는 게 아니라 권장을 하고 4항에 보면 개정 권고를 했는데…… 3항에서 권고하잖아요, 개정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박수영 위원** 그런데 4항에는 권고를 했는데도 안 들었으니 이것은 공정위가 직접 들어가서 제정·개정하겠다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읽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그런데 4항의 권고도 하려면 여전히 그 앞에 있는 조항의 요건이 필요하고요, 그런 경우 권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4항은 여전히 그냥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둔 거고요. 이것은 절차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한 거고요.

이 조항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둔 취지는 단계적으로 하게 하고, 그리고 5항처럼 또 거래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이런 절차적인 통제를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서 이것은 오히려 절차와 이런 것들이 더 잘 구비돼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동의하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부위원장님 설명은 그런데 조문을 그대로 문리해석을 하자면 이것은 권고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4항이. 제정·개정해서 또 권고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번문욕례가 되는 것이고 리던던트(redundant)해지는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그러니까 권

고를 하고 안 하면……. 현행 조항은 사실 그냥 작성해서 권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항에서 일정한 요건을 뒤서 그에 해당하는 경우는 권고를 먼저 일차로 하게 돼 있고 그래도 안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둔 거여서 공정위가 할 수 있다는 그 결과는 같은데 그 전 단계를 하나 더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동일한 조항을 놓고 차관님이랑 저랑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리해석을 하게 될 경우가 발생하니 4항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로는 현행 아닌, 권고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공정위가 직접적으로 제정·개정한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해 버릴 가능성이 높은, 다시 말해서 거래 자유의 원칙, 당사자 간 거래를 통해서 하게 되는 원칙을 살짝 깨고 들어가는 이런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4항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빼든지 아니면 제정 또는 개정해서 권고하면 또 3항하고 리던던트해지거든요. 그래서 4항은 필요 없는 조항이 아니냐 또는 공정위가 너무 나간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자문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 위촉할 수 있는데 자문위원은 도대체 지금 몇 사람이나 있고 예산은 얼마나 드는 건가요? 앞으로는 얼마나 더 위촉하려는 계획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이 표준계약서와 관련한 자문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이제 법에 근거가 도입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거래 양쪽의 의견이 잘 반영돼야 하고 또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은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공정위가 제일 전문가 아닌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그런데 이게 워낙 다양한 업계에서 사용되는, 계약의 내용이 달라서 저희들도 지금 업종별로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민법의 전문가, 상법의 전문가 이런 법률 전문가들

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수영 위원 몇 사람을 하고 예산이 얼마 들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6항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4항 부분은 소위 거래 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조항이라는 느낌을 제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4항은 삭제할 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설명이 충분하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설명으로는 4항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정문 위원 4항과 관련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1항은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더라도 그 사용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강제는 안 됩니다. 이 계약서는 사업자 고유의 권한이어서, 헌법상 계약자유 원칙이잖아요.

○이정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이나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거기까지입니다.

○이정문 위원 사업자나 계약자가 이것을 강제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아닌 거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항과 모순은 없어 보이는데……. 그런 취지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권고할 수 있다는 거기까지이고요, 그것을 채택할지 여부는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영역입니다.

○배진교 위원 그런데 이 문안으로 놓고 보면,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일정 정도 표준계약서를 권고했는데 이행을 안 했어요. 이 말에 따르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강제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박수영 위원님이 받아들이는 거고 저도 이 문구만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하나 단서 조항이 들어

갈 수 있으면…… 내용이 좀 혼동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원래는 그냥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만들어서 권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3항을 둔 것은, 의원님의 입법 취지는 ‘바로 가지 말고 이런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업종의 사업자들에게 자율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권고를 먼저 해 보자. 그랬는데 사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리스펜스(response)가 없으면 그때는 공정위가 한번 해 보라’의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 법안을.

○**배진교 위원** 지금 3항의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그러니까 3항이 공정위가 바로 만들지 말고 해당 업종한테 ‘이런 상황이니깐 이것 한번 제·개정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권고를 먼저 해 보고요, 그래도 해당 업종이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그때는 공정위가 직접 만들어서 권고해 보라, 사용…… 이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했습니다.

○**배진교 위원** 3항의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일정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여러 수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개정을 해 보라’ 권고를 해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이것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권고를 먼저 해 보라는 거예요.

○**배진교 위원** 그런데도 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나서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안 하면 공정위가 그때 만들어서 권고해 보라……

○**배진교 위원** 제정·개정해서 권고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이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결국 권고까지입니다.

○**박수영 위원** 권고 내용은 3항에 나와 있잖아요.

○**윤두현 위원** 현행 3조의2를 보면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조금 세분화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로 돼 있거

든요.

마련의 주체가 누구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사업자.

○**윤두현 위원** 사업자가 마련해서 공정위에 심사 청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했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그렇습니다.

○**윤두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공정위가 제정·개정할 수 있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그게 4항입니다.

○**윤두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강제거든.

○**배진교 위원** 계약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표준계약서를 만들겠다고요.

○**윤두현 위원** 표준계약서를 이렇게 만들라고 했는데 안 만들면…… 내가 듣기에는 설명하시는 것의 취지가 박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권장은 글자 그대로 권하여 장려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거고, 권고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강제력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제정·개정할 수 있다는 강제력이 수반되는……

이 단계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강제력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인 것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나는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위원장 말씀하시는 것과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개정안 1항은 현행 1항하고 동일한데 이것은 공정위가 만들어서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말해서 톱다운 방식입니다. 그게 1항이고요.

2항은 거꾸로 보텀업입니다. 사업자단체가 먼저 필요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정위에 심사 청구를 하도록……

○**윤두현 위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인데 그러면 이 자체, 제3조의2 1항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의 주체는 공정위라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1항은 공정위입니다. 현재는 공정위가 만들어서 사업자들에게

제공을 해 오는 방식으로만 해 왔습니다, 1항이.

○**윤두현 위원** 아니, 작성을 권장하는 건데 왜 공정위가 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너 이것 사용하세요’라고 권고를 하는 거지요. 그것을 채택하고 안 하고는 사업자들의 자율입니다. 그런데 1항의 취지는 공정위가 만들어서 사용을 권고하라는 거고요.

○**윤두현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지금 법적으로는 그것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해 왔고요.

○**윤두현 위원** 그런데 우리도 말과 글을 직업으로 하던 사람인데, 그러면 주어가 중간에 바뀌는 겁니다. 표준계약서의 작성, 표준계약서의 사용은 하나의 주어가 돼야 하지 왜 중간에 바뀌지요? 주어가 바뀌면 그 주어가 들어가야 분명해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사용을 권장……

○**윤두현 위원** 그러니까 작성하고 사용…… 작성하는 것도 사업자가 돼야 하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공정위가……

○**윤두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주어가 바뀌느냐 이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하는 건 아니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사용은 사업자들에게 하는 거고요.

○**윤두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권장은 공정위가 맞는데 작성과 사용은 사업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통상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그게 맞다 이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위원님, 작성의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윤두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작성하고 사업자들이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표현이 1항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만들어서 사업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톱다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윤두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정위가 작성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이렇게 해야 분명해지지 이렇게 해 놓으면…… 작성과 사용은 중간에 주어가 바뀌면 이른바 문장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헛갈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배진교 위원** 3항의 내용을 전제하면 사실 문안상으로 별문제가 없는데 이 3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해석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게 1항·2항의 상황이 발생하면 표준계약서를 바꿔 보라고 권고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사업자단체가 그 표준계약서 변경과 관련된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래 1항대로 그냥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지금 4항인 거잖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그겁니다. 그래서 3항·4항은 사실은 중간 단계를 하나 더 만든 거고요.

1항·2항이면 하나는 톱다운, 하나는 보텀업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3항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고, 그리고 안 하면 만들어 봐라, 이런 취지입니다.

○**배진교 위원** 사용자단체한테 자율성을 일단 준 거잖아요.

○**박수영 위원** 부위원장님, 배진교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이해가 가는데 4항 조항만 놓고 보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4항을 좀 손 봐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부위원장님 의견 주십시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면 안 됩니까? 3항에 연결돼서, 3항이 권고하는 건데 그 권고를 공정위가 고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고쳐서 권고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4항을 분명하게 ‘제정 또는 개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견 없습니다.

다만 1항에서 권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여기……

○**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흐름을 보면 맞는데 4항만 떼어 놓고 보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 조항을 보다 분명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저희들 이견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윤두현 위원** 잠깐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이 중간에 주체가 바뀌거든요.

○**배진교 위원** 일단 이런 1·2항 상황이 발생 경우에 공정위가 사용자단체한테 ‘이것은 변경이 필요하니 너희가 자율적으로 한번 바꿔 봐’라고 권고한다는 거고요.

○**윤두현 위원**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3조의2 1항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정문 위원** 그러니까 윤두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작성의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고 사용의 주체는 사업자나 또는 사업자단체니까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윤두현 위원** 일치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앤드(and)인데 앤드는 주어가 같아야지요.

○**이정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작성의 주체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또 공정거래위원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윤두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하니까 법적으로 성립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체는 모르는 사람이 딱 보면 작성의 주체와 이 사용의 주체가 같아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알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등이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3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3항은 권고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안 한 거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지금 배 위원님은 4항 수정안 말씀하신 거지요?

○**배진교 위원** 예.

○**윤두현 위원** 조금 다른 거야, 이게.

하여튼 그것으로 헛갈리지는 않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4항은 아까 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하면 어떨까 싶고요.

윤두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항은 말씀하신 것

처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단체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하자는……

○**윤두현 위원** 예, 그렇게 해 버리면 보다 명확해질 것 같아요.

○**이정문 위원** 아예 그렇게 문구를 바꿔 버리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이정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하고 문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1항도?

○**전문위원 김상수** 취지를 받아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취지를 정확히……

○**윤두현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분명하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그러면 1항하고 4항을 윤두현 위원님하고 박수영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하신 안대로 수정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예, 전문위원님들 잘 정리하세요. 그 정도 얘기했으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소위원장 김희곤** 다음 의견 있으시면……

○**박수영 위원** 2번 항목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병욱 의원님 안인 것 같은데 이게 낙찰자와 낙찰금액뿐만 아니라 입찰한 사람 전원에 대해서 입찰자와 입찰금액을 공개하자는 건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낙찰자만 공개하는 것 아닌가요, 보통?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보통은 낙찰자는 당연히 누가 낙찰됐는지를 알지요.

○**박수영 위원** 그리고 그 금액을 공개하자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입찰자, 떨어진 사람들 것도 이름과 금액을 다 공개하자는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입법 취지는 어떤 것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입찰의 투명성을 좀 높이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낙찰해 놓고

계속 다시 별도로 협상해서 가격 깎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발주 단계뿐만 아니라, 발주 단계는 지금 다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받은 공사를 하는 원사업자는 입찰 한 경우에 그 입찰 결과를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공개하라는 겁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찰자와 낙찰금액은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까지도 지금 다 공개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왜 필요한지 아직 설명이 안 됐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낙찰자에 대한 설명으로는 오케이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아닙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표를 보시면 발주 단계에서는 입찰자별로 입찰금액을 다 공개합니다.

그러나 하도급 단계, 그래서 누군가가 물건을 받아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한 경우에는 입찰 결과 공개하는 게 지금은 공백입니다.

다만 민간 공사까지 다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 100억 원 이상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원사업자가 국가가 하는 것 정도의 책임으로 입찰 결과를 공개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정문 위원 지금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는 사실 최저가 입찰제는 아니지요? 최저가 입찰제, 그러니까 가격이 제일 높거나 낮은 경우 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다른 여건이 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낙찰·입찰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사후에라도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의원안이 나왔

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다만 정부 의견 말씀드렸듯이, 또 박수영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입찰자까지 공개하는 게 너무 과하다 그러면 이것은 익명 처리해도, 저희들은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A 사업자 얼마, B 사업자 얼마, 그것까지는 문제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부위원장님, 질문 한 가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배진교 위원 지금 제3조의5 보면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배진교 위원 그러면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는 여기에 포함되니까, 안 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KDB인베스트먼트가 공공기관운영법에, 지금 보면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에 지정돼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일정한 요건이 되면 그걸로 지정되고 아니면 기타공공기관 이런 것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배진교 위원 만약에 이 법의 취지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가장 투명해야 될 곳이 저는 KDB인베스트먼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흥건설이 1차 입찰을 했는데 한쪽은 2조 4000억을 썼고 한쪽은 1조 8000억을 썼어요.

그런데 낙찰된 회사가 ‘이것 너무 많이 썼으니까 좀 조정해 주면 안 돼?’ 조정해 줬어요. 그러가지고 2차 입찰을 했는데, 그래서 2조 3000억인가에 낙찰을 봤단 말이지요.

과연 그러면 이게 정당한 절차냐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되게 심각하게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 산업은행장은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던 말이지요.

그러니까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양측의 입장을 다 들었고 한쪽, 그러니까 낙찰자도 그렇고 낙찰을 못 받은 업체도 다 이해해서 그래서 추가로 2차 입찰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비어 있는 곳이 있

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특히 입찰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큰 규모로 하고 있는 데가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담겨야 된다. 그래서 확인을, 점검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이 법안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 또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요, 이것은 지금 국가와 국가 소속 공기업·준정부기관만 대상인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기업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배진교 위원**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가는 것으로 의원안이 나와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이게 잘 정착되고 실효성이 있으면 확대해 가는 쪽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그냥 의원님 안을 그대로, 일단은 이렇게 시행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일단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 영역이지만 빠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특히 내년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하고도 이법이 대단히 밀접하게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부정보를 통해서, 물론 규제받는 대상을 이해충돌방지법이 대단히 넓게 해 놓은 상황이라는 하나 현재 입찰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 법안에서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김병욱 의원님 안을 보면서 일단은 단계적으로 하는 게 또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냥 수용했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발주했을 때 원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결과를 다 공개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해서 그 원사업자가 낙찰돼서 하도

급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을 하면 ‘국가가 한 것처럼 너도 투명하게 공개해라’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게 민간의 영역이 아니고요, 국가가 100억 원 이상 발주한 그 공사에 한해서 ‘너도 국가기관에 준해서 공개해라, 그래서 입찰자들이 투명하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해라’ 정도의 의미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작……

○**김병욱 위원** 차관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고 아마 그 의견이 대한건설협회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김병욱 위원** 입찰자까지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방금 말씀 잘하셨잖아요.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인 경우는 입찰자하고 입찰금액을 다 공개하는데 왜 하도급에 내려가서 입찰자하고 금액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상 비밀일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에서 생기는 입찰 과정의 불공정거래라든지 질서 위반을 우리가 경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건데, 원도급에서는 입찰자와 입찰금액을 다 공개하는 것으로 이미 법이 돼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시행되고 있는데 하도급 단계에서는 그것을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입찰자를 공개안 한다고 그러면 이 법의 목표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정부와 전문위원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일단 일차적으로 한 발 나가는 입장에서 입찰자를 제외하고는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원도급에서 다 공개하고 있는 것을 하도급 단계에서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안 한다? 그것은 논리적 모순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이 될까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위원님, 저는 강한 주장 아닙니다.

(웃음소리)

강한 주장 아닙니다. 저는 위원님들 논의에 충분히 따를 거고요. 다만 이런 의견이 있어서……

○**김병욱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가와 그다음에 공공기관·준정부기관, 100억 이상 이렇게 다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민간 사이드에서 경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전혀 없고 공공의 영역에 한해서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서 입찰 과정에서 생기는 무질서라든지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동안 하도급 단계에서는 이런 게 누락이 돼 있었던 것을 원도급과 똑같이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 없이 통과시켜도, 왜냐하면 지금 원도급업체 입찰자와 입찰금액을 공개해서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없습니다.

○김병욱 위원 없지요. 원도급에도 없는데 하도급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

○김병욱 위원 편하게 말씀하세요, 편하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떨어진 하도급업체 입장에서 공사도 떨어졌는데 내가 쓴 금액까지 나가는 게……

○김병욱 위원 원도급도 마찬가지이지요. 원도급에서도 떨어지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우리가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되지 하도급에서만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입찰자를 공개 안 한다는 게 우리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찰자를 하도급에서 빼려고 하면 오히려 앞에 원도급에서도 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법안 발의자로서 해 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위원님 논의에 저희들은 동의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저도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아주 열정적으로 옹호를 하셔서…… 타당한 면도 상당히 있고요. 2개가 일단, 발주 단계하고 하도급 단계가 일치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팩트체크를 하나 하자면 국가계약만 지금 우리가 입찰자별 입찰금액을 공개하는 것 아닌가요? 지방계약은 아닌 것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 계약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이 표는 안 그런데? 3페이지 표

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3페이지 검토의견 보면 국가계약만 입찰자별 입찰금액을 공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개찰 결과만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도급에 내려가면 아예 입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즉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위원님, 그래서 국가계약만 먼저 시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국가계약에서도 입찰자별 입찰금액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맞추더라도, 우리 정부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국가계약법 쪽에서도 낙찰된 것은 낙찰자 명과 낙찰금액을 공개하고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액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떨어진 사람들의 건설회사 이름까지 다 공개하면서 얼마로 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비밀도 있을 것이고 명성에도 지장이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즉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에서는 입찰 결과를 공개하되 낙찰자와 낙찰금액은 공개하고 나머지 입찰을 제안한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액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가고 이다음에 국가계약법을 또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병욱 위원 입찰자를 공개하는 게 아마 짬짜미 또는 위장사를 설립해서 유찰을 시키거나 또는 가격 담합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든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짬짜미나 담합이라는 게 원도급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도급에서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린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 공개하는 것이 우리가 원래 법을 만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박수영 위원님이 정 그러시다 그러면 이번에 한해서는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과를 위해서는 한 발이라도 전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고요.

저는 원취지대로 생각한다면 입찰자를 공개하는 것이 담합이나 위장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

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전원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수정의견으로 해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정문 위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이게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과태료 액수의 수준은 지금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타 위반행위에 비추어서 과다하거나 과소하거나 그런 점은 혹시 없습니까, 검토하실 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저희는 이것은 괜찮다고 봤습니다. 다른 유형별로 봐서……

○이정문 위원 다른 유형에 비추어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태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넣어 주시면 실효성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일부 수정하지요, 또 박수영 위원님이 주장하시니까.

○배진교 위원 김병욱 위원님, 내용 중에 아까 그 범위 있잖아요. 국가와 지자체도 지금 중요하지만 산업은행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이번 국감에서도 다뤄 봤지만 완전히……

○김병욱 위원 지금 얘기하는 건 하도급법이라서…… 그것은 하도급법이 아니고 매각 관련된 가격 아니에요? 좀 다르지. 이것은 하도급법을 다루는 거고 그것은 대우건설 매각 관련된 얘기잖아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배진교 위원 아니……

○박수영 위원 배진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법에 딱 맞지는 않으니깐 우선은 이 법대로 진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욱 위원 이 법은 아니라는 것이지. 법안 개정안을 내세요. 우리 심도 있게 검토할게요. 배진교 위원님께서 그 관련된 법을 내시면……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위원님, 이것은 국가가 발주한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입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 M&A 하는 건 아니지요.

○김병욱 위원 좀 다른 차원이라서…… 이 법이 아닐 것 같아요, 배진교 위원님.

○배진교 위원 국가계약법을 바꿔야겠네.

○김병욱 위원 법안을 내시면 저희가……

아, 그것은 우리 것 아니다. 기재위 것……

○배진교 위원 기재위, 기재위.

○소위원장 김희곤 제가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아까 4번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 추가, 정부안에 대해서, 약정 CR은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특수한 계약 형태인데 이에 대해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가, 부적절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위원님, 이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사유가 기존에 1호, 2호가 있었는데요. 3호 같은 것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분야에 ‘내가 앞으로 1만 개의 물량을 너한테 발주를 할 테니 3년에 걸쳐서 5%씩 깎자’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비용이나 감가상각을 해서 첫해에는 100원 주고 95원, 90원……

그런데 그런 단가계약을 하고 나서,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약속했던 물량이 뒷받침돼야 그 원가를 맞출 수가 있는데 중간에 물량을 반으로 줄여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가격은 줄어들면서 단가만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3호가 새로 생기는 게 그런 경우, 물량을 축소해 가지고 이게 원가를 못 맞출 경우에 단가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하나 더 추가하자 그런 정도의 취지입니다.

물론 이것 가지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사업자들 간의 협의에 달려 있는데요, 사유는 하나 집어넣어 주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이것 약정 CR의 특성상 의도적으로 인하를 큰 폭으로 적용해 버리고 추후 단가 조정한다든지 해서 제도 악용할 소지는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이것은 수급사업자를 오히려 보호하자는 거니까요.

3호의 내용은 하여튼 장기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간에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수급사업자가 단가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하나 넣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급사업자한테 도움이 될 조항인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원사업자가 악용하는 경우는 조금 상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에 일부러 많이 깎아 놓고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은 수급사업자가 안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대략……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5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1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방문판매법에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정거래법하고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심분 공감을 하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방문법의 경우에는 위원님들 판단하시는 데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방문법은 법 위반의 기준이나 이런 게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래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 그리고 방문법은 주로 형사적인 집행이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전속고발제가 없어서 동의의결로 끝내도 누군가가 검찰이나 이런 데에 별도로 고소·고발하면 형사 제재가 또 이루어진다는 그런 특성이 좀

있고요.

그런 면을 보면 동의의결제가 방문법에 도입돼도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높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참고로 검찰에서는 만약에 방문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 검찰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는 그 조항을 반드시 명시적으로 좀 넣어 달라, 공정거래법에 준용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방문법에 있어서만큼은 좀 검찰과 협의해야 된다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규정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검찰하고 어떻게 협의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입법을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동의의결제를 가면 우리가 법 위반을 가리지 않고 합의로 끝내게 되지 않을까?

○배진교 위원 예.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 이것 형벌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데 미리 끝내면 어떡하냐’ 해서 모든 동의의결 절차에는 검찰하고 협의해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사전에.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법에 그게 들어와 있고 개별법에서도 다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는 방문법은……

방문 분야가 좀 그렇지 않을까? 이게 사기성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분야만큼은 동의의결이 도입된다면 동의의결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검찰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규정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저는 일단 동의의결제도가 신속하게 법적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널리 검찰이 그런 염려를 갖고 있다면 그 조항은 분명하게 검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 한이 있더라도 동의의결제도로 빠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문 위원 지금 현재는 준용 규정도 없나요, 지금 법에 검찰과의 협의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아니요, 준용 규정은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준용 규정이 있는데 검찰과 협의를 명시해 달라는 건 뭐지요, 명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그러니까 그 준용 규정을 빼고 별도로, 다만 이것 하기 전에는 검찰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것을 ‘공정거래법 제 몇 조를 준용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풀어서 여기다가 직접 써 달라는 겁니다.

○**이정문 위원** 준용한다는 규정 대신 그 준용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하지 말고 준용의 내용을 여기다가……

○**이정문 위원** 준용의 내용이, 검찰과 협의한다 그 내용을 넣어 달라 그런 취지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그런 요청입니다.

아마 사업자들이 이런 것을 보고, 준용 규정보다는 명시적으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알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배진교 위원** 지금 우리가 대리점이나 가맹점 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대기업들과는 다르게 지금 공정위가 파악한 대로라면 실제적으로 방판법 적용 대상 사업자 대부분이 중소 또는 영세한 사업자라고 한다면 동의의결제도가 신속성이나 이런 부분들 포함한 것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까지를 포함하는 어떤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중소·영세사업자라고 한다면 그 규모도 작을뿐더러 또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공정위가 얘기한 대로 위법행위 여부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동의의결보다는 구체적으로 사건별로 해결해 가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더 수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공정위 의견처럼 약간 이 부분, 방판법과 관련해서는 동의의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일단 공정위에서 말씀하신 의견에 찬동하신다는 거지요?

○**배진교 위원** 예.

○**소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일단 수

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협의하는 과정만 넣어서 의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7항을 심사할 차례이지만 대표발의 의원님이 심사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7건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법안 취지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10분만.

○**소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취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저쪽하고 어떻게 되었는데……

○**김병욱 위원** 예, 10분만 취지만 설명을……

○**소위원장 김희곤** 왜냐하면 다음에 권익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김병욱 위원** 예, 10분만……

○**전문위원 김상수** 온라인플랫폼 설명 올리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은 지금 7건의 제정법률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법률 제명은 각기 다릅니다.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과 공청회 내용을 우선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경과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 정보 독점 문제, 플랫폼사업자의 상품 직접판매 등의 경우에서 지배력 이용을 통한 불공정성 문제,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에 따른 혁신 저해 등에 대한 제도적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하

셨고요.

박용진 위원께서 제정법이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통과되기 바라며 충분한 사전 조사와 자료조사 등을 통해 법 적용 대상 기업과 대상 행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형배 위원님께서 분쟁조정·위반행위 조사권 등의 분권화, 이용사업자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22일 공청회에서도 대체토론과 사실상 대체로 유사한 진술 및 의견이 있었음을 간략히 보고드리면서, 사실상 이 법안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 의견을 간략하게 듣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정부 측에서 그것 관련해서 의견이 어떻게 조율되었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알겠습니다.

이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다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다만 온라인플랫폼이라는 이런 새로운 거래 수단이 등장하면서 약 한 200만 개 이상의 입점업체와의 거래가 새롭게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규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이 법을 준비했구요.

다만 그것 해결하는 것은 자율 해결이 우선이다, 그래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소 규제 원칙으로 저희들이 정부안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방위의 이용자보호법하고 중복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주로 중복이 되는 게 금지행위, 사후 규제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금지행위 부분에 온라인플랫폼 쪽은 기본적으로 이 온플법에 의해서 규율하고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와 또 온플법에서 커버되지 않는 다른 유형의 사각지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차관님, 이 법이 작년에 나온 이

후로 저희가 또 새로운 플랫폼 시대에 맞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법을 만들다 보니까 부처간에 이견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리고 방통위와의 합의 내용 그다음에 정부와 전체적인 합의 내용을 좀 자세히 해서, 아주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우리 여야 위원님들한테 미리 나눠 주시지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법안소위 할 때는, 우리가 공청회도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별로 토론회도 많이 했지만 합의된 내용을 갖고 빨리 심의해서 정기국회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김병욱 위원 그래서 공정위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안소위 회의장에서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미리 여야 위원님들 각 방에, 특히 배진교 위원님 빠뜨리면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김병욱 위원 꼭 이렇게 해서, 정의당하고 국민의당 포함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면……. 오늘은 아무래도 시간 때문에 더 이상 진도가 나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 법안소위 때 아마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제가 다음 주 월·화에 소위 위원님들 직접 찾아뵙고……

○김병욱 위원 예, 자료도 잘 만들어 주시고.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법안 설명하고 그다음에 합의된 내용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설명 잘 안 되면 심의 못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예,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7건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재신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회의장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안성욱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6)

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8)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9)

2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1)

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69)

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9)

3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0)

3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0)

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0)

3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1)

3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258)

3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8)

3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89)

3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3)

(17시31분)

○소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4항, 이상 9건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권익 26번부터 3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보고 올리겠습니다.

동 내용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등 가액 범위 조정입니다.

사실상 설·추석 관련 선물 가액 범위 조정입니다.

동 개정안은 전봉민·김성원·최형두·정희용·송재호·이개호·최승재·윤창현·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8건의 개정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등으로 농축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 등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첫째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여기에는 명절이나 재난 상황이 있습니다—에 한정하여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안과 두 번째 안은, 두 번째 분류는 모든 기간에 대해서 가액 범위 조정·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2페이지 수정 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제8조제3항제2호의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제가 우선 수정의견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 수정의견입니다.

제8조제3항제2호입니다.

기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물품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단서를 신설합니다.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설날·추석에 한하여 그 가액 범위를 2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한다’.

여기에서 시행령에 일부 위임했는데, 앞으로 권익위가 개정할 시행령을 밑에다 적어 놔줍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앞으로 개정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17조제2항에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간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설날·추석 후 7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가액 조정 대상 품목은 명절 기간 소비가 집중되어 법 개정애 따른 경기진작 효과가 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특정 업종의 상품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가액 범위를 달리하는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으나 중소기업제품·장애인제품 등은 소비 수요와 명절 등 특정 시기와의 연관성이 낮아서 법 개정 효과가 불분명하고 제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품목 지정 및 안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액 조정 기간은 설·추석으로 한정하는 것이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법 개정의 효과를 얻기 위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재난·경제위기 상황을 가액 조정 기간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사실상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재난·경제위기 상황 판단 주체가 불분명하여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등 가액 조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실 가능합니다만, 저희 국민권익위에서 내부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찬반 논의도 있었고 또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런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국민인식도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만 사실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청탁금지법상 선물 등 가액을 조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잘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시행령 개정보다는 입법으로 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번 7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그 안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드렸고 이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것 만약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입법적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그다음 2번.

○전문위원 김상수 2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선물 등 가액 범위 검토 의무 부여인데 전봉민 의원, 윤창현 의원이 발의하셨는데요.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가 가액 범위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물 가액 범위의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이나 현재도 매년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를 통해서 가액 범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개정의 실익이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난 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권익위의 의결로 가액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난 상황 판단 주체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워 선물 가액 범위의 잦은 상향 요구로 청탁금지법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국민권익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봉민 의원님하고 윤창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그 안은 선물 등 가액 범위 검토 의무를 우리 국민권익위에 부여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 또 내부적으로 전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대로 선물 등 가액을 내용을 조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입법을 통한 여러 가지 선물 가액 조정을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결정한다고 하면 지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가액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안을 통해서 개정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견은 이 두 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배진교 위원 질문……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일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부의 찬반이 물론 있었을 거고, 우리 국민들 시선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가액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어떻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저희가 국민생각함을 통해서도 한번 여론조사를 했고요, 또 외부에 용역을 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은 가액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 50% 이상이 반대 의견이고요, 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들도 60% 이상이 사실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윤두현 위원 조사했다니니까……

농산물 때문에 그러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윤두현 위원 농민들을 대상으로 따로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저희가 따로 그렇게 특정 직역을 해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두현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필요한 게, 물론 가장 좋기는 정상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농산물의 주요 수요처인 명절 선물이 잠기니까 농민들이 괴롭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일반 여론조사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비는 구멍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은 정부 부처가 탄력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부겸 총리께서 정부가 시행령을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여론의 부담 등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게 이쪽으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그렇습니다.

○윤두현 위원 그렇다면 부처에서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 특히 이해관계자의 입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송재호 위원 저도 이 법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올리면, 제가 본 조사 결과는 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 하면 그냥 제 해석은 이래요. 균형발전하고도 여론이 비슷한 건데, 서울시민이라도 사실 고향은 팔도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고향 농어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다, 그런 차원에서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양 명절에 한해서는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다만 우려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청탁금지법의 원래 취지와는 사실 조금 동떨어진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소위 가치라든가 실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감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패를 방지하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하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농어민이라든가 취약계층, 우리의 고향을 좀 살리고 보호해야 된다는, 어느 쪽에 가중치가 더 있는냐는 지점을 좀 권익위가 고려해 주었으면……

또 심지어는 지금 이 법이 우리 소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이러이러한 게 있을까 봐서 농어민

단체들이 와 가지고 법사위에서 그러지 마시라는, 이걸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할 만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국민권익위가 전향적으로 소위 이 법 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참 다행이다,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법이 지금 5년 됐는데요, 차제에 그 5주년에 즈음해서 이 법이 실제 가치를 잘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감정과 조금 동떨어지거나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를 좀 광범위하게 토론도 하고 밖으로 내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이 부분만이 아니고 크게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좀 덧붙이는 말씀으로 제가 좀 드릴게요.

○소위원장 김희곤 김병욱 간사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김병욱 위원 이게 사실 작년 추석하고 올 설에는 20만 원으로 상향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리고 그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 다 동의를 받아서 했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얼마나 산고를 겪은 통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에는 두 번에 걸쳐서 20만 원으로 올렸지만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총리님도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을 해 달라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지금 이게 수정안도 보면 본법에는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본법에 금액이 픽스가 돼 있지 않은데 이런 현상들이 또 벌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서?

물론 저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부 구성이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청탁 방지에 더 비중을 둔 분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법이 이렇게 통과됐을 때 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이 그 금액을, 대부분 20만 원 정도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인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사실 저희가 수정의견을 낸 게……

원래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한 9개 법안에 있는 내용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또 시기를 설날이나 명절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또 우리 권익위 안에서 그 문제를 논의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수정의견은 보시면 임의규정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그러니까 설날과 추석에 한하여 그 가액 범위를 2배로 하는 걸로 정해 났고요. 다만 시기만 별도로 저희가 시행령을 통해서 정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전원위나 이런 데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입법적으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배진교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수정안은 일상적 시기에……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설날과……

○배진교 위원 설날과 추석은 가액의 2배 범위까지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그렇습니다.

○배진교 위원 국민들 우려가, 그러니까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일상적 시기에……

물론 농어민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만 사실 일상적 시기에 현재 가액의 2배, 그러면 그냥 20만 원이라고 치면 20만 원에 대한 국민적 정서는, 그것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인데 과연 이게 일상적 시기에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특수한 재난 상황인 경우에는 농어민들도 충분히 지원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정문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배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하고 올해 추석하고 설의 경우는 코로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어쨌든 한시적으로 상향을 했었는데요, 올 추석 같은 경우는 권익위에서 그걸 안 하는 바람에 기존대

로 10만 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개정되는 법률안은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이나 추석에도 계속해서 2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0만 원 정도 허용하는 것으로 지금 법안들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한시적이었던 것이기는 했는데요, 또 제가 농협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동안 선물 가격을 한 10만 원이든 이렇게 세트 구성을 맞추다 보니까 비싼 국내 농산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수입산이라든지 저가의 제품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농업단체에서 말씀하기를.

그리고 또 사실상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물량이 추석 때하고 설 때 거의 많은 경우는 25%까지, 적은 경우는 8%, 품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를 들어 배 같은 경우는 25%가 명절 때 소비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동안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물론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어렵지만 농촌 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추석이나 설에 한시적으로라도 그렇게 좀 풀어 주신다면 농촌의 소득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저는 위원님들의 그 상향안에 동의하고 권익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배진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런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두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또 이번 입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조회하고 또 여러 가지 확인해 본 결과 농식품부나 해수부 이런 부처의 얘기는 농수산물 전체 판매량의 한 40% 이상이 사실은 추석이나 설날에 판매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그런 특수한 재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설이나 추석 명절 때는 가액 범위를 법에서 풀어서 농수산 상인들의 여러 가지 매출이나 경제 소비진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봐서 저희가 수정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 한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하려고 그러합니다. 저도 찬성은 하는데요.

먼저 최근에 농가들의 비용 상승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비료 같은 경우가 내년 2월에 주로 계약하게 될 건데요, 작년 대비 2배 정도 오를 걸로 이미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건비의 상승도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부에서 답변한 것처럼 이때 집중적으로 판매가 되는데 우리 농가의 또 농업 산업의 발전적 측면에서도 이 고급 품질의 그런 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너무 우리가 어떤 금액에 한정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정하는 건 아니고 또 농민·어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열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예, 말씀하십시오.

○송재호 위원 하나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면 우리가 저출산을 이야기할 때 출산 이것, 어떻게 인구의 감소를 막을 건가. 한 30년 후면 인구가 절반이 된다고 하는데 결국 대책은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 정부가 보장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생각들이. 뭐 프랑스처럼 2명 낳고 1명 입양하면 먹고살게 해 드리는 거지요.

그렇게 가지 않겠나 싶은데, 이 농촌도 지방 소멸이 아주 심각한데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우리가 돈을 드려야 될지 몰라요, 실은. 안 그러면 사실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재난적 상황에 이 농어촌이 있다고 봐야 되고.

거기다가 이런 코로나보다 농어촌에 더욱 심각한 것은 재난이 매해 일어납니다, 실은 기후위기 때문에.

예를 들면 17개 시도 중에 한 여섯, 일곱 개가 빠지는 거지 두세 개 시도는 매번 재난 상황에 있어요. 그냥 깡그리 망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 쓸어 버려, 가뭄이 저서 그래, 한파가 저서 그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도 이 법 개정과 관련해서 좀 광범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소위원장 김희곤 말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배진교 위원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때 농수산물에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화훼…… 그러니까 꽃, 난, 이런 분들의 요구사항도 상당히 만만치 않았거든요.

제가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공감하면서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를테면 화훼 같은 경우에도 왜 농수산물만 허용해 주냐, 화훼 같은 경우에는 입학 때 졸업 때 이때 수요가 제일 많은데 그러면 이때 또 풀어 달라고 하면 풀어 줄 거냐, 각 산업마다 자기 산업 특성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요구가 있을 때마다 다 풀어 줄 거냐……

또 한 가지는 우리 농민들, 어민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꼭 이 청탁금지법의 가액을 높여 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지원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지금의 가액을 2배로 했을 때, 사실 국민들의 정서상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선물을 주고받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잖아요, 2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그런데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에 한정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것을 풀어 줘서 공무원들에게 20만 원씩 선물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열어 준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국민들 정서가 어느 정도로 공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가 농업인들…… 화훼, 각 농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만 산업에 대한 발전 문제와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청탁금지법의 애초 취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소위원장 김희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것 같고요. 각론적으로 가서 아니면 좀 범위를 확대시켜서 재난적 상황이나 아니면 여타 다른 업종들, 다른 어떤 그것까지 확대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범위를 확대시키다 보면 전 산업, 전 국민 다 걸쳐서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해서 동의를 해서 명절 때 선물을 20만 원으로 상향하자 했는데 결국 권익위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역으로 우리가 또 엄청난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는 법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지금 10만 원 선물을 20만 원, 10만 원 더 올려서 우리가 받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취지는 농어민들 좀 도움이 되도록 해 보자는 근본적인 취지로 가고요.

그래서 이 논의는 여기서 종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갔고요, 벌써.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배진교 위원 가결시키려고요?

○소위원장 김희곤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4항, 이상 9건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권익위를 좀 더 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됐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네 시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는 다음에 최대한 많은 법들을 통과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안성욱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김상수 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과 의정기록과·의회경호과 직원들, 의원실 보좌직원들과 각 정당의 전문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 병 욱 김 희 곤 박 수 영 배 진 교

송 재 호 유 동 수 유 의 동 윤 두 현
이 정 문

○청가 위원(1인)

박 용 진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용 준
전 문 위 원 김 상 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국 무 2 차 장 윤 성 육
재 정금 융 정 책 관 임 형 철
규 제심 사관 리 관 이 수 일
청 년 정 책기 획 관 손 동 균

공정거래위원회

부 위 원 장 김 재 신
기 획 조 정 관 이 순 미
소 비자 정 책 국 장 남 동 일
시 장 감 시 국 장 김 정 기
유 통 정 책 관 최 무 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 성 육
부 패 방 지 국 장 한 삼 석
심 사 보 호 국 장 김 기 선